

민법개정안 의결

- 성년후견인제 도입
- 민법상 성인나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포함 37개 법안 통과

기존 민법상의 금지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후견인의 현존능력과 개별 상황 등을 고려한 '성년후견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민법상 성년연령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50여년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후견제도의 변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성년후견제는 법적 능력을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제약했던 기존의 금지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탄력적인 후견제도다. 먼저 후견인의 대리없는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의 금지산제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인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로 대체된다. 또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기존의 한정치산제는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차용이나 보증 등 가정법원이 정한 중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정후견제로 바뀐다.

후견대상과 보호범위도 확대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게만 국한됐던 현행 후견대상을 치매노인 등 고령자에게까지 넓히고, 보호범위를 재산적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와 요양 등 복리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선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후견인 양성 및 선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현행 친족회는 폐지되고 후견감독인 제도가 신설된다. 후견계약규정을 신설한 점도 특징이다. 향후 치매 등으로 정신

능력이 약화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본인이 아닌 법원이 후견인과 후견내용을 결정해왔다.

개정 민법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9세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이나 신용카드 개설 등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사소송절차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금까지는 소장 등에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납부만이 가능했다.

또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기본재산 20% 범위 내에서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재석 210명 중 찬성 100명, 반대 89명, 기권 21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법률신문 전제인용)